

대구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308321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소 11472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8.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9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등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및 피고의 목적물 이전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2019. 8월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수령한 계약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그 밖에 위약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낙형, 판사 정석원, 판사 진세리